

일시 : 2016.9.29.(목) 16:30
장소 : 성북배움터(구청 3층)

- 2016년 9월 (제39차) -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성북구 인권위원회

목 차

1	보고사항	1) 제3기 성북구 인권위원회 구성	3
		2) 인권도시 성북 전략과제 주요 내용 보고(인권센터 2년 보고서)	
		3) 인권센터 주요 업무 보고	5
		4) 제38차 인권위원회 개최결과	9
2	2016-6호 심의사항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인권영향평가 결과	10

제3기 성북구 인권위원회 구성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역할

-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심의 및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추진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 구청장이 제정·입안하는 조례, 정책 사업의 인·허가가 주민의 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제26)
-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 등의 권고
- 주민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자문과 평가
- 실태조사, 인권교육에 관한 자문

□ 인권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합계	2기 연임	주민공모	구의회	단체 추천	위원회 추천
20	4	4	2	6	4

※ 2기 연임위원 중 3인은 주민공모, 1인은 당연직임

□ 구성 분야

(단위 : 명)

구분 합계	구의회	교육	문화	건축	아동	노동	여성	장애	주거	당연직	빈곤	법률
20	2	2	2	1	3	2	1	1	2	1	1	2

□ 연령별 현황

구분	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남	9	3	4		2	
녀	11	2	6	3		
합계	20	5	10	3	2	

□ 3기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 20명 (남 9명, 여 11명)

연번	성명	현직	비고
1	김경옥	교육공간 민들레 대표	
2	김은애	인권단체(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3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4	김일영	성북구구의원	
5	김지희	문화다양성네트워크 PM	
6	박다혜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7	손민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법센터 연구원	
8	엄혜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9	유의선	사회단체(전국빈민연합) 활동가	
10	윤성봉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	
11	윤정섭	고명경영고 교사	
12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13	이경선	홍익대학교 교수	
14	이경환	감사담당관	
15	이미영	성북구구의원	
16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전임교수	
17	이진수	서울수송초등학교 교사	
18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19	전문수	민간단체(나눔과 미래) 활동가	
20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사무처장	

보고사항 3) 인권센터 주요업무 보고

10기 주민인권학교 안내

- 수강신청기간 : 2016. 9. 26(월)부터 마감시
- 교육장소 : 성북구청 배움터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 팩스, 이메일

회차	일시	강의주제	강사
1강	10.27(목)	영화 「비밀은 없다」, 감독이 들려주는 인권이야기	이경미(영화감독)
2강	11.03(목)	인권이란 무엇인가	조효제(성공회대 교수)
3강	11.10(목)	여성과 인권, 여성혐오 논란을 넘어	엄혜진(여성학 박사)
4강	11.17(목)	아동인권 놀이가 사회를 바꾼다	편해문(놀이터디자이너)

인권센터 시민위원 활동 1주년 평가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6. 9. 30.(금) 16:00~18:00
- 장 소 : 성북배움터(구청 3층)
- 참석대상 : 인권센터 시민위원(13명)
- 취 지 : 인권센터 시민위원 1년 활동 평가 및 대외내 확산
-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비고
기조발표1	인권센터 시민위원 1년 활동 평가 보고	오미숙 (인권센터)
기조발표2	인권제도의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속가능 방안 모색 - 성북구 인권센터 시민위원을 중심으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평가토론	- 시민위원별 활동 평가	인권센터 시민위원
	- 외부 전문가 토론	강현수 (충남연구원)

보고사항 3) 인권센터 주요업무 보고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지킴이 양성교육과정 5기(일정변경)

- 위탁기관 :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위탁금액 : 3,395천원)
- 대 상 : 청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 누구나
- 접수기간 : 2016. 9. 26(월)부터 마감시
- 교육장소 : 성북구자기주도학습센터 1층, 성북구청 배움터, 기관탐방
- 모집정원 : 25명(선착순)
- 수 강 료 : 무료(수료증 발급)
-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일시	차시	시간	장소	교육내용
10.20(목)	OT	17:30~18:00	자기주도 학습센터	교육과정이해, 설문조사방법 등
	1차시	18:00~19:30		노동인권 이해
10.25(화)	2차시	17:30~19:30	자기주도 학습센터	청소년 노동현황 파악
10.27(목)	3차시	17:30~19:30	자기주도 학습센터	노동법 및 노동침해 사례 연구
11.1(화)	4차시	17:30~19:30	자기주도 학습센터	모의교섭 역할극
11.3(목)	5차시	17:30~19:30	자기주도 학습센터	상담의 기본원리와 자세, 대화법
11.8(화)	6차시	17:30~19:30	성북구청 배움터	청소년 노동 인식 개선 활동 (※ 자원봉사활동 2시간 인정)
11.10(목)	7차시	17:30~19:30	기관탐방	유관기관 탐방 및 현장체험
11.15(화)	8차시	17:30~19:30	자기주도 학습센터	모니터링 분석결과 및 평가, 수료식

보고사항 3) 인권센터 주요업무 보고

교사인권캠프 계획(직무연수 인정)

□ 세부교과 진행표

○ 1일차 - 10.20(목), 성북구평생학습관

교시 날짜	1		2		3		4		비고 (시간)
	16:30~18:10				18:20~20:00				
제1일 (10월 20일)	개강식	인권의 이해			사회적 쟁점과 인권적 접근			4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박래균 (인권재단 사람 소장)				

○ 2일차 - 10.21(금), 한국자활연수원

교시 날짜	이동	1	2	저녁	3	4	비고 (시간)
	15:00~15:30	15:30~17:30		18:00~19:00	19:00~20:40		
제2일 (10월21일)	구청집결, 한국자활연수원 출발	영화 「4등」으로 살펴본 인권문제 공감		석식	빛장열고 인권과 만나기		4
		국가인권위원회제작			우진아 (인권강사, 심리운동가)		

○ 3일차 - 10.22(토), 한국자활연수원

교시 날짜	아침	1	2	3	점심	3	4	5	6	이동	비고 (시간)	
	08:00~09:00	09:00~11:30			11:30~13:00	13:00~14:40		15:00~16:40		16:40~18:40		
제3일 (10월22일)	조식	인권친화교실 만들기			중식	청소년 인권1- 나이와 미성숙주의		청소년 인권2- 혐오와 다양성의 이해		수료식	서울 도착	7
		이은진 (발산초, 교사)				홍의표 (신방학초, 교사)		김지학 (한국다양성 연구소 소장)				

보고사항 3) 인권센터 주요업무 보고

복지시설종사자 및 사회적경제 주체를 위한 인권교육 안내

○ 교육내용

회차	일시 및 강의주제	강사
1강	○ 10. 11(화)14:00~16:00	하 승 수 (변호사)
	인간답고 지속가능하게 살려면 -인권과 환경, 에너지문제를 중심으로	
2강	○ 10. 11(화) 16:00~18:00	김 영 주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아동 학대 사례에 대한 법적 개입	

○ 신청기간 : 2016. 9. 23(금) ~ 10. 6(목)

○ 신청방법

- 소속기관 일괄 접수 및 개인신청 모두 가능
- 인권교육신청 작성후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제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일정

○ 사업명 : 장위구립도서관 문화복지타운 건립

○ 위 치 : 장위동 223-24, 224-1 연면적 1,500㎡

○ 일 시 : 2016.10.5.(수) 14:00

○ 장 소 : 자원봉사상담실(구청7층)

○ 참석대상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해당건축물 설계자, 관련부서(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인권센터 담당 공무원 등

제38차 인권위원회 개최결과

1. 개최개요

- 일 시 : 2016. 9. 1.(목) 16:00~18:20
- 장 소 : 성북배움터
- 참 석 자 : 9명(김은영, 김한민, 박현숙, 배미영, 윤성봉, 윤정섭, 윤지영, 이윤하, 최도용)
- 주요안건
 - 조례·규칙 제·개정안 인권영향평가 심의(5건)
 - 행정대집행 계획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2. 회의결과

- 조례·규칙 제·개정안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
 - 성북구 동행(同幸)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 : 권고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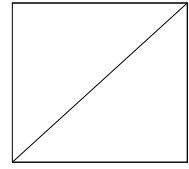
권고 주요 내용

제7조의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에 있어서 제2조 정의에 기재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이 조례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것

-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3개 조례 : 원안동의
- 행정대집행 계획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 세입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가 있었는지 우려되는 점이 있으나, 철거대 집행을 고려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 당일 상황까지 인 권센터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할 것
-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용역 추진 현황
 -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지킴이 양성 교육과정(5기)
 -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성 북 구
인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6-6호
보 고 연 월 일	2016. 9. 29.(목)

심의사항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인 권 영 향 평 가 결 과**

보고자	성북구 감사담당관(인권센터)
-----	-----------------

목 차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12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18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2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중 기후변화기금이 추가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후변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추가 신설함.(안 별표 1)
 - 위원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도시환경국장
 - 위원회 위원 : 6명(구간부 3명, 구의원 1명, 민간위촉직 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P28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환경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기획예산과
		협의기간	2016. 08. 24. ~ 2016. 09. 05.
	입법예고	2016. 09. 08. ~ 2016. 09. 28.(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6년 10월	
	의회상정	2016년 10월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환경과	공업7급	홍기현	2241-3024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권리 침해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6-21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체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6. 9. 26.)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1. 제안이유

가. 아동기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특정 계층의 보호, 복지증진, 참여확대 등의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미래의 성장 동력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의 복지와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동기금 설치가 필요함

2. 주요내용

미래의 인재인 아동·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사회 참여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안 제28조)

- 재원 :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잡수입 등
- 용도 : 아동의 참여활동 및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을 지원, 아동관련 실태조사·연구업무 지원, 아동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 운영 : 필요시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930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기획예산과
		협의기간	2016.08.19
	입법예고	2016. 9. 19 ~ 2016. 10. 9(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6. 10월	
	의회상정	2016. 11월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행정7급	구경민	2241-2413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6-22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체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6. 9. 27.)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6.01.15.) 및 (2016.09.13.)】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 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 강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사항 정비 (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1) 위원장을 경리관에서 민간 위원중 호선토록 함 (안 제3조)

2) 구의 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 (안 제3조)

3) 위원 자격 사항 정비 (안 제3조)

다. 위원의 해촉 조항 정비 (안 제11조)

라.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금액 변경 (안 제12조)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937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재무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기획예산과
		협의기간	2016.09.12부터 2016.09.21.까지(10일간)
	입법예고	2016.09.29 ~ 2016.10.19 (20일간 예정) 매체 : 구보(✓), 기타(성북구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6. 11. 중	
	의회상정	2016. 12. 중	
첨부자료	필수자료	조례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성북구청	재무과	행정7급	경현선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권리 침해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6-23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체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6. 9. 28.)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항 목	검 토 의 견	비 고
<p>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p>	<p>[제3조 (구성)] 2항 ‘성별을 고려하여’ 를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는 등 구체적인 할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균형적인 성별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됨</p> <p>[제11조 (위원의 해촉)] 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로 수정할 것</p> <p>‘심신장애’란 법률적, 심리적으로 해석함에 있 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가 있는 상태를 총칭하는 말로 장애인차별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p>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 13란 다음에 구분 1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기후변화기금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6	3	1	2
----	--------	------	--------	---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구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 명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위원 구성 (구간부:간사포함)			
				계	구간부	구의원	민 간 위 축 직
1	공용청사 건립기금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11	6	1	4
2	체육진흥기금	부구청장	교육문화복지국장	9	4	2	3
3	재난관리기금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11	7	0	4
4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장학계정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5	2	1	2
	※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의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자금의 심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5	노인복지기금	부구청장	교육문화복지국장	12	2	2	8
6	여성발전기금	부구청장	교육문화복지국장	16	3	1	12
7	식품진흥기금	부구청장	보건소장	11	5	1	5
8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10	4	1	5
9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부구청장	행정국장	6	3	1	2
10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부구청장	행정국장	6	3	1	2
11	도로굴착 복구기금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9	6	0	3
12	한옥보전 지원기금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9	5	1	3
13	사회투자기금	부구청장	마을재생기획단장	11	3	1	7
14	기후변화기금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6	3	1	2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앞의 “제4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제4장 보 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3장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아동기금) ①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의 육성과 보호,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아동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참여활동 및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

2. 아동관련 실태조사·연구업무

3. 아동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임자료 : 조례안]

④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의 연번 15란 다음에 연번 16란을 다음과(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연번	기금명칭	기금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6	아동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금별 존속기한

연번	기금 명칭	기금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	공용청사관리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2	체육진흥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3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법정
4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임의
5	노인복지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6	성평등기금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법정
7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법정
8	중소기업육성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9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0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1	도로굴착복구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2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법정
13	한옥보전지원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4	기후변화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5	사회투자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6	아동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장 보 칙 (이동 2015. 09. 30)</p> <p><u><신 설></u></p>	<p><u><삭 제></u></p> <p><u>제28조(아동기금) ①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의 육성과 보호,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아동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u> <u>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u>3. 그 밖의 잡수입 등</u> <p><u>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아동의 참여활동 및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u> <u>2. 아동관련 실태조사·연구업무</u> <u>3. 아동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u>

<p><신 설> <u>제28조 ~ 제30조</u> (생략)</p>	<p>4. 그 밖에 <u>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④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제4장 보칙</u> <u>제29조 ~ 제31조</u>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와 같음)</p>
---	--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붙임자료 : 조례안]

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제2항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붙임자료 : 조례안]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의 경리관이 되고, 위원은”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제3조제2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있는”을 “풍부한”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106조의2에 따라 다음”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붙임자료 : 조례안]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중 “이상 10억원 이하인”을 “이상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① <u>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u></p> <p>1. <u>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u></p> <p>2. · 3. (생략)</p> <p><u><신 설></u></p> <p>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u>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제2조(기능) ① <u>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u>입찰</u>-----</p> <p>-----</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u></p> <p>5. <u>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u></p> <p>6. <u>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u></p>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구의 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라 -----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무관은 당연직 위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

· 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
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
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
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
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
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생략)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
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하
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 사람으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
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
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5. <삭제>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
던 사람-----
----- 풍부한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
----- 영 제106조의2에 따라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 설>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써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

다음 ----- 경우에는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

----- 이상인

-----.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p>회의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 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u>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5.]